

수수료 반환청구서

처리기간		즉시	
의뢰인	성명	사업자등록번호	
	상호명		
	주소	(전화번호:)	
청구내용	접수기관명		
	접수번호(전자문서신청번호)	접수일자	
	검역신청품명		
	반환청구액		
	이체계좌번호	계좌은행명	

- ※ 수수료 반환청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.
- 1.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
 - 2.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
 - 3.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

「수산물품질법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수료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수수료납부 기관의 장 귀하

